

#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비고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	○		서약서	-	* 각 청약별 자격확인	건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*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	신청자 구비
	○		인감도장	본인	*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	
	○		신분증	본인	*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*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*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*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-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* 주민번호 전체 표시 / 발급기간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(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) - 발급기관: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직계존속	*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발급기간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 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직계비속	*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발급기간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 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*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*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*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확인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*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	
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*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		
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 자녀	*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*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		
대리 계약 추가 서류	○		계약자인감증명서(위임용) 및 인감도장	-	*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- 인감증명서 용도: 아파트 계약 위임용 ※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. - 대리인: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-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계약체결 장소 비치)	건본주택 비치
	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-		
			위임장	-		
부적격 등보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신청자 구비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  
 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)  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반드시 '주민등록번호',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, '주소변동이력 및 일자'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  
 ※ 상기 서류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'입주자모집공고일'입니다. (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